

의안번호	2205009
의뢰인	박지원의원
회답일	2025.1.10.
추계번호	24D46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제1호나목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범위 확대 -(현행)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함)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 현행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1호나목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북한이탈주민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나목 신설)

-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북한을 이탈한 본인만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에서 출생하여 함께 탈북한 자녀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나, 탈북 이후 제3국 또는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현행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현행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한 사람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수 증가에 따

라 창업지원(제17조의6)¹⁾²⁾, 취업장려금을 포함한 정착금 등의 지급(제21조)³⁾⁴⁾, 교육지원(제24조)⁵⁾⁶⁾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2024년 9월 기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만 4,259명이며,⁷⁾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경우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북한이탈주민인 부모와 동반 입소한 제3국 출생 자녀 수는 2011년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949명임⁸⁾

○ 다만,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취업·창업 현황, 취학 현황 등에 대한 통계가 부재하여 현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위 확대에 따른 창업지원금·정착금·교육지원금 등의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1) 현행법 제17조의6(창업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
2. 현장 실습
3. 창업 상담
4. 창업 자금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2) 통일부는 기창업자 및 소규모 신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 세 부사업에 2025년 예산안 기준 1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음

3) 현행법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금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4) [참고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의 지급기준

5) 현행법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적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6) [참고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기준

7)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입국자 기준)

(단위: 명)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9.	합계
남	5,788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40	35	32	22	9,564
여	12,210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3	32	164	159	24,695
합계	17,998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181	34,259

8) 하나원 제3국 출생 자녀 입소 현황

(단위: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4.12.	합계
인원	121	81	100	87	84	101	105	114	100	20	3	2	10	21	949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

[참고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의 지급기준

구분		지급금액	지급기준·지급내용
정착기본금		1,000만원~4,100만원	·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 - 초기지급금: 700만원 하나원 수료시 지급 - 분할지급금: 100만원×3회(분기말 지급)
가산금	고령가산금	800만원	· 만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한부모가정 아동보호가산금	400만원	· 만13세 미만 한부모아동 대상
	장애	중증 1,540만원 경증 360만원	· 거주지 보호기간 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치료	최대 720만원 (1개월 입원 시 80만원, 최대 9개월)	· 거주지 보호기간 내 중증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자녀 1인당 (최대 2자녀) 450만원	· 거주지 보호기간 내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무연고청소년	최대 240만원	· 만24세 미만 무연고 청소년(2024년부터 지급)
주거지원금		1,600만원~2,300만원	·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 · 하나원 수료 및 주거계약 시 임대보증금 납부 - 납부후 잔액은 수료 5년후 지급
지방거주장려금		160만원 / 320만원	· 하나원 수료 후 전입신고시로부터 2년후 지급 (인천 제외 광역시 160만(주거지원금의 10%), 지방 320만(주거지원금의 20%))
정착장려금	취업장려금	200만원~800만원	· 고용보험 가입 업체 6개월 이상 재직, 최장 3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보로금		·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나 재화를 포함하여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최대 10억원까지 대상자에게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	

주: 정착기본금, 가산금, 주거지원금 등은 세대별로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세대원 수에 포함되어 있으나,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각각에게 지급되는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등은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일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 세부기준>

(단위 : 만원)

가족수	기본금		주거지원금	합계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1인	700	300	1,600	2,600
2인	900	700	2,000	3,600
3인	1,100	1,000	2,000	4,100
4인	1,300	1,300	2,000	4,600
5인	1,500	1,600	2,300	5,400
6인	1,700	1,900	2,300	5,900
7인이상	1,900	2,200	2,300	6,400

자료: 통일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참고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기준

구분		지급내용	지급기준
지원 대상 에 북한이 탈주민 본 인만 해당	장학금	· 대학생 학기당 200만원 내 외 · 중·고등학생 학기당 100만원 내외	· 중·고등학교 및 대학(원)생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금	· 입학금(1회) · 수업료 - 국공립-전액 면제 - 사립대-50%	· 입학 또는 편입학 기준 만 34세 이하 · 국내 고교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지원 대상 에 북한이 탈 주민 의 자녀 포함	탈북 청 소년 학 교 운영 지원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 지원	·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의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 지원
	진로진 학 지원	· 진로·진학 상담	· 탈북학생(중·고·대·대학원)
	학습지	· 주1회 과목별 15분 가정방문 학습지도	· 만3세부터 초등학교까지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 어교육	· 주 60분 화상영어 수업 지원	· 만9세부터 만24세까지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멘토링	· 1:1 학습멘토링	· 북한이탈주민 자녀(초·중·고등학교)
	교육기 관 운영	· 교육기관 사업지원금 교부	· 대안교육기관 6개소(150백만원 이내) · 지역아동센터 7개소(60백만원 이내)
	통일전 담 교육 사 배 치	· 학습지도 · 상담지원 · 체험학습	· 북한이탈주민 자녀 재학 초·중·고등학교

자료: 통일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